국내 독립투자자문업자(IFA)제도 도입 및 시사점

□ 지난해 국민 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이후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IFA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금융자산 투자 시 투자목적으로 노후 소득 마련을 우선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오히려 금융투자상품을 활용한 자산관리는 부진한 것으로 보임

□ 영국의 투자상품 및 연금시장의 대표적인 판매채널인 IFA는 투자상품에 대한 자문 뿐만 아니라 은퇴 설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도입 예정인 국내 IFA 역할 또한 개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으로 판단

□ **지난해 국민 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이후 독립투자자문업자[1](Independent Financial Adivisor: IFA) 제도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IFA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서비스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3월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안)에 관한 사전예고를 실시[2)3)]

— 이 외에도 자문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자문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자문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문서비스의 공급 뿐만 아니라 수요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마련

-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단위을 신설하여 자본금 요건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
- 또한 금융투자상품과 예금에 대한 투자자문 뿐만 아니라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에 있음

— 이번 IFA 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상품 제조·판매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금융상품자문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 요건 및 보수 수취방식 등 보다 구체적인 안을 마련

1) 독립투자자문업자(IFA)는 금융상품의 제조 및 판매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2) 금융위원회, 2016.03.24, 국민 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3) 금융위원회, 2017.03.03,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안) 사전예고 실시, 보도자료.

- 자문료는 고객으로부터만 수취가능하며 금융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수취를 금지하고 독립투자자문업자가 예외적으로 수취 가능한 경미한 재산상의 이익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음
- 취급상품의 경우 특정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에 국한된 자문은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 종류 및 목적에 한정된 자문은 허용하나 이를 공시하도록 함

□ **한편, 우리나라의 전체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금융자산 투자 시 투자목적으로 노후 소득 마련을 우선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오히려 금융투자상품을 활용한 자산관리는 부진한 것으로 보임**

— 2016년 기준 국내 전체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은 26.0%로 전년대비 0.5%p 감소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지속[4)]

-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 추이: 2005년 14.0%, 2010년 21.4%, 2015년 26.5%, 2016년 26.0%

— 또한 금융자산 투자 시 주된 목적을 '노후대책'이라고 답한 비중이 2016년 기준 55.2%로 2011년대비 6.4%p 증가하였으며, 이는 노후 생활자금 마련에 대한 필요성과 이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 그러나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자산운용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2016년 기준 예금에 대한 비중이 91.5%로 매우 높은 반면 주식 및 수익증권에 대한 비중은 각각 2.4%, 1.6%로 금융투자상품을 활용한 자산관리는 부진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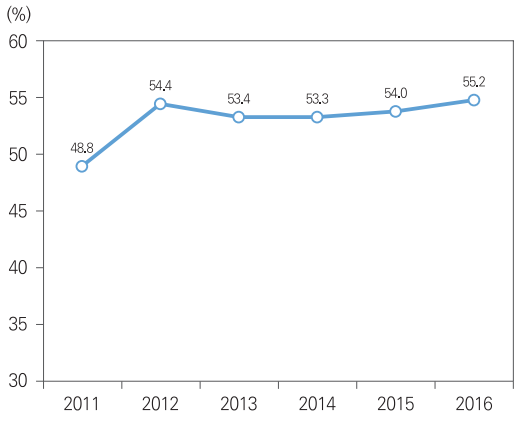
- 은행예금에 대한 자산운용 비중은 2016년 75.6%로 2011년대비 10.2%p 증가하였으나 주식 및 수익증권의 비중은 2011년대비 각각 1.0%p, 2.9%p 감소하여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보임

— 금융투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보험·연금에 포함된 금융투자상품(주식 및 채권, 펀드)을 고려한 전체 가계자산 중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미국 52.0%, 영국 27.0%, 일본 20.6%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12.5%로 가계의 금융자산에서 금융투자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2014년 기준)[5)]

4) 통계청의 연도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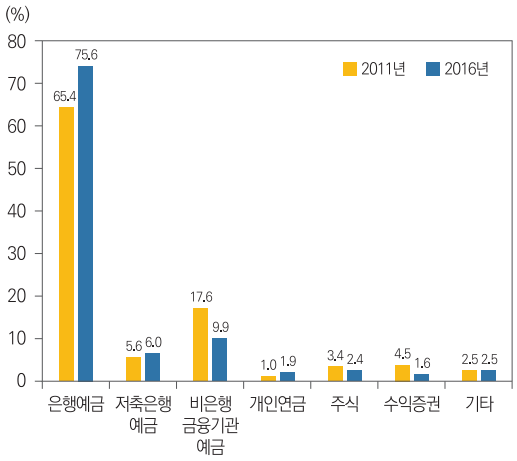
5) 금융투자협회, 2015.09.02, 최근 5년간 국내 가계 금융자산 지속적 증가, 보도자료.

금융자산 투자 시 '노후대책' 목적 비중



자료: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자산운용 비중



자료: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 **영국의 투자상품 및 연금시장의 대표적인 판매채널인 IFA는 투자상품에 대한 자문 뿐만 아니라 은퇴설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도입 예정인 국내 IFA 역할 또한 개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으로 판단**

— 영국의 IFA는 보장성상품보다는 주로 투자형 및 연금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고령화 등에 따른 개인의 투자자문 수요가 증가하여 IFA 상위 10개사 중 9개사의 수익 70% 이상을 투자상품 및 연금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6)]

— 영국의 IFA들은 각자 당국에서 허가를 받은 업무(regulated activity)에 대해 영위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투자, 연금, 모기지 등 금융 전반에 대한 자문업무와 금융상품 중개업무 뿐만 아니라 여신상담, 주택매각 상담, 투자일임 등의 업무도 수행

- 인가단위는 '업'이 아닌 '규제대상행위(regulated activity)'이며, 금융시장법(Financial Service and Markets Act 2000)에서 해당 행위를 열거하고 있음

— 한편, 영국에서는 소매판매채널 개선 방안(Retail Distribution Review: RDR)[7)] 이후 상품공급업자로부터 수수료(commission) 수취가 금지되고, 고객에게 직접 자문보수(fee) 수취만 가능하게되었으나 큰 폭의 수요 감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도입 예정인 국내 IFA의 경우 도입 초반에는 펀드나 특정 투자상품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나 궁극적으로 개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국내의 경우 저금리, 고령화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더불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투자자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

선임연구원 박신애

6) 보험연구원, 2015,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7) 2012년말부터 소매투자시장의 건전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자문업자의 전문성, 자문체계의 명확화, 자문비용청구 등의 사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투자형상품(retail investment product)에만 적용